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012 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이 다양화되어 이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일부 개정(안 제32조 제1항 제2호 별표 5)
-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규격 추가, 수수료 일부 상향
-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교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3396-5453, 팩스 : 3396-8754, email : (coldho7@junggu.seoul.kr,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1	가방류	가로 50cm 이상	3,000
		가로 50cm 미만	2,000
2	가스레인지 받침	모든 규격	2,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4	간판(철판)	40cm×100cm 이상	6,000
		40cm×100cm 미만	3,000
5	거울	높이 50cm 이상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6	건조대	전체	2,000
7	고무통	지름 100cm 이상	5,000
		지름 50cm 이상	3,000
		지름 50cm 미만	2,000
8	공기청정기	대형(사업장용)	5,000
9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10	금고	1m 이상	10,000
		1m 미만	7,000
11	김치냉장고	130L 이상	5,000
		130L 미만	3,000
12	김칫독	용기 제품 제외	5,000
13	깨진 유리	베란다유리 크기 미만	2,000
		베란다유리 크기 이상	3,000
14	나무 묶음	직경 40cm	2,000
15	나무판자	개당(2m 이하)	1,000
16	난로	모든규격	3,000
17	냉장고	업소용	15,000
		500ℓ 이상	10,000
		300ℓ 이상	7,000
		300ℓ 미만	4,000
18	다리미 판	모든 규격	1,000
19	돛자리, 장판	3.3㎡당	1,000
20	런닝머신	모든 규격	18,000
21	마네킹	전체	3,000
22	목욕탕수건함	모든 규격	1,000
23	문갑	모든 규격	3,000
24	문짝	개당	2,000
25	물탱크(저수조) 〈FRP 또는 플라스틱〉	15인승 이상	12,000
		15인승 미만	7,000
26	밥상	5인용 이상	4,000
		4인용	2,000
		3인 이하	1,000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27	배기 후드	모든 규격	2,000
28	변기	좌변기(소형)	5,000
		양변기	10,000
29	병풍	2폭당	1,000
30	보일러	16,000cal/h 이상	12,000
		16,000cal/h 미만	8,000
31	보일러 기름 탱크	모든 규격	2,000
32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33	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34	분말 소화기	가정용 10kg 미만	3,000
35	비키니(간이)옷장	모든 규격	3,000
36	서랍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37	선풍기	날개 50cm 이상, 영업용	4,000
38	세단기	모든 규격	5,000
39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4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41	소파	4인용 이상	10,000
		3인용	8,000
		2인용	6,000
		1인용	3,000
42	스피커	개당	1,000
43	식기 건조기	모든 규격	2,000
44	식기 세척기	모든 규격	5,000
45	식탁(테이블)	6인용 이상	5,000
		5인용 이하	4,000
		4인용 이하	3,000
46	신발장	높이 120cm 이상	3,000
		높이 120cm 미만	3,000
47	쌀통	모든 규격	3,000
48	쓰레기통	사무실 · 옥외용	2,000
		가정용	1,000
49	씽크대	60cm 1개당	3,000
50	아기 침대	모든 규격	4,000
51	액자	대형(넓이 5m ² 이상)	2,000
		소형(넓이 5m ² 미만)	1,000
52	어항	1m 이상	6,000
		1m 미만	4,000
53	에어컨	254m ² 이상	8,000
		66m ² 이상	5,000
		66m ² 미만	3,000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54	오디오	대형	5,000
55	오디오 장식장	모든 규격	3,000
56	자석 매트	모든 규격	2,000
57	온풍기	254m ² 이상	8,000
		66m ² 이상	5,000
		66m ² 미만	3,000
58	오락기	대형(업소용)	8,000
59	오르간	모든 규격	5,000
6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61	욕조	모든 규격	7,000
62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63	유아용 목마	모든 규격	1,000
64	유아용 자동차	모든 규격	2,000
65	의자	일반 의자(4인용 이상)	5,000
		일반 의자(3인용)	4,000
		일반 의자(2인용)	3,000
		일반 의자(1인용)	2,000
66	이불(요, 담요)	1채당	2,000
67	인형, 장난감 류	개당	1,000
68	자동판매기	대형(음료·커피·담배)	15,000
		소형	5,000
69	자전거	성인용	5,000
		아동용 이륜	4,000
		유아용 삼륜	3,000
7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71	재봉틀대	모든 규격	6,000
72	장롱	30cm당	3,000
73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74	전기장판(담요)	모든 규격	2,000
75	전자 오르간(디지털 피아노)	모든 규격	4,000
76	정수기	20ℓ 이상	5,000
77	진열대	모든 규격	3,000
78	찬장	1칸	3,000
79	책꽂이(책장)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3,000
		2단 이하	2,000
		90cm×180cm 이상	10,000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90cm×180cm 미만	6,000
80	책상	양수	7,000
		편수	4,000
		컴퓨터 또는 서랍없는 책상	3,000
81	가림막	높이 1m 이상	3,000
		높이 1m 미만	2,000
82	청소기	핸디형(로봇 청소기 제외)	4,000
83	침대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만	8,000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만	5,000
84	카펫	3.3㎡당	2,000
85	캐비닛	모든 규격	4,000
86	탁자	10인 이상	8,000
		3인 이상	5,000
		2인 이하	3,000
		차 탁자	2,000
87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6,000
		42인치 미만	3,000
88	텔레비전 받침	모든 규격	3,000
89	파티션	1칸당	2,000
90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91	항아리	용기 제품	2,000
92	헬스 기구	5kg 이상	6,000
		5kg 이하	4,000
93	헬스 자전거	모든 규격	4,000
94	화분	대형(직경 50cm 이상)	2,000
		소형(직경 50cm 미만)	1,000
95	파일 캐비닛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2,000
96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97	환풍기	모든 규격	2,000
98	히터	모든 규격	2,000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